

● 제29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616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20. 6. 5.
- 다. 회 부 일 : 2020. 6. 10.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조 8,995억 7천 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04억원(0.2%)을 증액하였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104억 증액되어 편성된 것임.

<표>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3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232,108	4,899,575	4,889,105	10,470(0.2)
일반회계	2,780,251	3,416,855	3,406,386	10,469(0.3)
세외수입	경상적	13,851	14,005	-
	임시적	39,635	40,433	-
지방교부세	432	170	170	-
국고보조금 등	2,713,016	3,350,954	3,340,485	10,469(0.3)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13,318	11,293	11,29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7	1,482,720	1,482,719	1(0.00007)
세외수입	임시적	2,621	2,905	-
	국고보조금 등	678,572	752,308	752,308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770,664	727,507	727,506	1(0.0001)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1,651억 1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99억원(1.1%)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3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7,020,115	8,165,116	8,075,124	89,992(1.1)
행정운영경비	752	697	697	-
재무활동	768,910	975,074	925,074	50,000(5.4)
사업비	6,250,453	7,189,344	7,149,352	39,992(0.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증감액 추정편성을 실시해 30개 사업, 8조 1,65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시행)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0.2.4)를 배부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휴관과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 동시에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됨.¹⁾
-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처럼 코로나19로 겪게되는 재난상황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 “코로나19가 사회복지시설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복지타임즈>, 2020.05.18.,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7>> (접속일:2020.06.10.)

운영비 지원” 사업 5억 7,600만원 증액,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143억 4천 9백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2억 2천만원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900억 원을 증액한 8조 1,651억원의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2 세입 및 세출 총괄

1.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조 8,995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²⁾에서 104억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 증액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104억 증액되어 편성된 것임.

<표>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19년 대비 (비율)	20년 대비 (비율)
		기정예산	3차 추경 예산안		
합계	4,232,108	4,889,105	4,899,575	667,467(15.8)	10,470(0.2)
일반회계	2,780,251	3,406,386	3,416,855	636,604(22.9)	10,469(0.3)

2) 본 보고서에서 기정예산은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함.

3)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국비 3억원 포함 (간주처리)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비율)	20년 대비 (비율)
		기정예산				
세외수입	13,851	14,005	14,005	154(1.1)	-	
경상적 임시적	39,635	40,433	40,433	798(2.0)	-	
지방교부세	432	170	170	△262(△60.6)	-	
국고보조금 등)	2,713,016	3,340,485	3,350,954	637,938(23.5)	10,469(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18	11,293	11,293	△2,025(△15.2)	-	
의료급여 기금특별 회계	1,451,857	1,482,719	1,482,720	30,863(2.1)	1(0.00007)	
세외수입	2,621	2,905	2,905	284(10.8)	-	
임시적						
국고보조 금 등	678,572	752,308	752,308	73,736(10.9)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0,664	727,506	727,507	△43,157(△5.6)	1(0.0001)	

2.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1,651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99억 9천 2백만원(1.1%)이 증가되었으며 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6억원 포함 (간주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증액된 내용은 사업비 399억 9천 2백만원(0.6%) 증액, 재무활동비 500억 원(5.4%) 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비율)	20년 대비 (비율)
		기정 예산			
합 계	7,020,115	8,075,124	8,165,116	1,145,001(16.3)	89,992(1.1)
행정운영경비	752	697	697	△55(△7.3)	-
재무활동	768,910	925,074	975,074	206,164(26.8)	50,000(5.4)
사업비	6,250,453	7,149,352	7,189,344	938,891(15.0)	39,992(0.6)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과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500억 1백만원 증액, 지역돌봄 복지과 284억 8천만원 증액, 장애인자립지원과 130억 5백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정책과 7억 4천 5백만원 증액, 인생이모작지원과 4억 8천만원 증액, 어르신복지과에서 7천만원을 증액해 서술한 순서대로 추경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지원과에서는 27억 9천만원의 감추경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지원과의 감추경은 국비변경내시가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임

<표> 복지정책실 각 과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예산 (A)	기정예 산 (B)	제1회 추가경 정규모 (C)	제2회 추가경 정규모 (D)	제3회 추가경 정규모 (E)	제3회 추경 예산(안) (F=B+C+ D+E)	(19대비) 증감률 ((C+D+E)/A)	본예산대비 증감 ((C+D+E)/B)
계	7,020,115	7,705,151	431,924	△61,951	89,992	8,165,116	6.6	5.7
복지정책 과	3,115,422	3,311,824	371,205	△36,020	50,001	3,697,010	12.4	11.6
지역돌봄 복지과	245,343	262,552	45,278	△2,244	28,480	334,067	29.1	27.2
어르신 복지과	2,278,495	2,585,269	728	△9,578	70	2,576,489	△0.4	△0.3
인생이모 작지원과	292,964	320,781	14,325	△2,744	480	332,842	4.1	3.8
장애인복 지정책과	236,934	269,946	248	△4,760	745	266,179	△1.6	△1.4
장애인자 립지원과	682,953	752,739	-	△1,840	13,005	763,904	1.6	1.5
자활지원 과	168,003	202,040	140	△4,764	-2,790	194,626	△4.4	△3.7

3) 세부사업별

- 복지정책실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
해 7건, 716억원,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 16건, 증 173억원, 기타
사업비 증감에 따른 사업 7건, 1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총 30개
사업에서 900억원의 증감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 규모 (C)	제2회 추가경정 규모 (D)	제3회 추가경정 규모 (E)	제3회 추경 예산(안) (F=B+C+D+E)	(19대비) 증감률 ((C+D+E)/A)	본예산대비 증감 ((C+D+E)/B)
	총계	7,020,115	7,705,151	431,924	△61,951	89,992	8,165,116	6.6%	5.7%
	복지정책과	3,115,422	3,311,824	371,205	△36,020	50,001	3,697,010	12.4%	11.6%
1	의료급여사업	1,449,327	1,497,708	△17,500	-	1	1,480,209	△1.2%	△1.2%
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	-	200,000	-	50,000	250,000		
	지역돌봄복지과	245,343	262,552	45,278	△2,244	28,480	334,067	29.1%	27.2%
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1,037	94,514	155	-	576	95,245	0.8%	0.8%
4	긴급복지지원 사업	27,678	26,795	-	-	8,972	35,767	32.4%	33.5%
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0,210	12,307	-	-	14,349	26,656	140.5%	116.6%
6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066	12,536	-	△2,244	4,583	14,875	76.3%	18.7%
	어르신복지과	2,278,495	2,585,269	728	△9,578	70	2,576,489	△0.4%	△0.3%
7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80,608	192,057	-	-	△1,000	191,057	△0.6%	△0.5%
8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7,106	2,789	-	-	413	3,202	5.8%	14.8%
9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23,924	39,959	-	-	634	40,593	2.7%	1.6%
1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	-	-	-	23	23		
	인생이모작지원과	292,964	320,781	14,325	△2,744	480	332,842	4.1%	3.8%
11	저소득	28,992	30,960	-	-	480	31,440	1.7%	1.6%

연 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 경정 규모 (C)	제2회 추가 경정 규모 (D)	제3회 추가 경정 규모 (E)	제3회 추경 예산(안) (F=B+C +D+E)	(19대 비) 증감 률 ((C+D+ E)/A)	본예 산대 비 증감 ((C+D+ E)/B)
	어르신 급식제공								
	장애인복지정책 과	236,934	269,946	248	△4,760	745	266,179	△1.6%	△1.4%
12	서울시보조기 기센터 운영	1,390	1,705	-	-	△180	1,525	△12.9%	△10.6%
13	서울시장래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운영		-	-	-	180	180		
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0,027	10,816	-	-	525	11,341	5.2%	4.9%
15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운영	37,603	43,081	-	-	220	43,301	0.6%	0.5%
	장애인자립지원 과	682,953	752,739		△1,840	13,005	763,904	1.6%	1.5%
16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8,357	18,357	-	-	1,517	19,874	8.3%	8.3%
17	장애아가족아 동양육지원	3,296	3,293	-	-	678	3,971	20.6%	20.6%
18	장애인체육시 설 운영	3,385	4,416	-	-	1,380	5,796	40.8%	31.3%
19	장애인활동지 원사업-활동 지원급여	287,872	354,354	-	-	8,803	363,157	3.1%	2.5%
20	장애인의료비 지원	6,442	5,366	-	-	360	5,726	5.6%	6.7%
2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858	806	-	-	148	954	17.2%	18.4%

연 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 경정 규모 (C)	제2회 추가 경정 규모 (D)	제3회 추가 경정 규모 (E)	제3회 추경 예산(안) (F=B+C +D+E)	(19대 비) 증감 률 ((C+D+ E)/A)	본예 산대 비 증감 ((C+D+ E)/B)
22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6,112	2,332	-	-	120	2,452	2.0%	5.1%
	자활지원과	168,003	202,040	140	△4,764	△2,790	194,626	△4.4%	△3.7%
23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7,347	8,482	-	-	166	8,648	2.3%	2.0%
24	자활근로사업 지원	84,692	109,561	-	△1,078	△1,229	107,254	△2.7%	△2.1%
25	희망키움통장 I	2,363	3,107	-	-	△424	2,683	△17.9%	△13.7%
26	희망키움통장 II	7,012	8,880	-	-	△1,718	7,162	△24.5%	△19.4%
27	내일키움통장	555	603	-	-	486	1,089	87.6%	80.6%
28	청년희망키움 통장	2,520	3,089	-	-	△499	2,590	△19.8%	△16.2%
29	청년저축계좌	-	2,229	-	-	428	2,657		19.2%

3 추경안 검토의견

1.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1)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에서는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500억 1백만원의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으로 5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의료급여 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1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표> 복지정책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비고
계	복지정책과	(×1,529,014) 3,647,008	(×-) 50,001	(×1,529,014) 3,697,009	
1	의료급여사업	(×751,053) 1,480,208	(×-) 1	(×751,053) 1,480,209	
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200,000	50,000	250,000	

(2) 지역돌봄복지과

○ 지역돌봄복지과에서는 총 4건의 사업, 284억 8천만원에 대해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자가 큰 복지관 6개소 순으로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5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89억 7천 1백만원 (국비 변경내시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43억 4천 9백만원,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돌봄SOS설치 운영사업에 45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함.

<표> 지역돌봄복지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비고
계	지역돌봄복지과	(×35,597) 305,587	(×5,981) 28,480	(×41,578) 334,067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94,669	576	95,245	
2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17,863) 26,795	(×5,981) 8,971	(×23,844) 35,766	
3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12,307	14,349	26,656	
4	서울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동별 돌봄SOS센터 설치하여 8대 돌봄서비스 제공	10,292	4,583	14,875	

(3)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는 총 4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에서 10억 7천만원이 증액되고 1건의 사업에서 10억이 감액된 총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업의 보건복지부 분담금 결정통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분기별 예탁금 10억을 감액함.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1천 3백만원을 증액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특화사업'이 추가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억 3천 4백만원을 증액함.

-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 비용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2천 3백만원을 증액함.

<표> 어르신복지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비고
계		(×1,968,608) 2,576,419	(×646) 70	(×1,969,254) 2,576,489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분기별 예탁	192,057	△ 1,000	191,057	
2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장비보강 등	(×606) 2,789	(×206) 413	(×813) 3,202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욕구맞춤형 서비스 제공	(×26,621) 39,959	(×417) 634	(×27,038) 40,593	
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 비용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	(×23) 23	(×23) 23	

(4) 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과는 1건의 사업에서 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사업이 코로나19로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인해 대체 식 제공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및 단가 인상분 4억 8천만원을 증액함

<표> 인생이모작지원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비고
계	인생이모작지원과	(×96,533) 332,362	(×-) 480	(×96,533) 332,842	
1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지원	30,960	480	31,440	

(5)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감액사업은 1건으로 ‘서울시보조기기센터운영’ 중 일부 예산을 장애인의 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사업비로 분리하기 위해 180백만원을 감액 추경하였음.
- 증액사업은 총 3건, 925백만원이며,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18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 신규 센터 조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52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직업재활시설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 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 220백만원을 증액하였음.

<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비고
계	장애인복지정책과	(×58,945) 265,434	(×-) 745	(×58,945) 266,179	
1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704	△ 180	1,524	
2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180	180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0,816	525	11,341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3,081	220	43,301	

(6)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총 7건, 13,005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국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517백만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678백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360백만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지원’ 148백만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2,70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 확정내시 금액 7,355백만원, 시비추가 사업 단가 인상분 448백만원,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추진 1,000백만원 등 8,80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기타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권고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장애인체육시설운영’ 예산 1,380백만원, 양천 장애인복지관

긴급기능보강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1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비고
계	장애인자립지원과	(×307,380) 750,899	(×5,492) 13,005	(×312,872) 763,905	
1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9,178) 18,357	(×759) 1,517	(×9,937) 19,874	
2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988) 3,293	(×203) 678	(×1,191) 3,971	
3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4,416	1,380	5,796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	(×179,844) 354,354	(×4,276) 8,803	(×184,120) 363,157	
5	장애인의료비 지원	(×2,683) 5,366	(×180) 360	(×2,863) 5,726	
6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403) 806	(×74) 148	(×477) 954	
7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332	120	2,452	

(7) 자활지원과

○ 자활지원과는 총 7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에서 10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4건의 사업에서 38억 7천만원이 감액된 총 2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사업 1억 6천 6백만원, 내일키움통장사업 4억 8천 6백만원, 청년저축계좌 4억 2천 8백만원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 증액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근로사업지원사업의 20년 자활사업(자활근로)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

른 매칭분 감액분을 반영한 12억 2천 9백만원,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4억 2천 5백만원,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의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17억 1천 8백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의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4억 9천 9백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남.

<표> 자활지원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비고
계	자활지원과	(×96,716) 197,416	(×△1,650)) △2,790	(×95,066) 194,626	
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2,877) 8,482	(×83) 166	(×2,960) 8,648	
2	자활근로사업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73,965) 108,483	(×△838) △1,229	(×73,128) 107,254	
3	희망키움통장 I -기초수급자 등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장려금 매칭지원	(×2,066) 3,107	(×△237) △424	(×1,829) 2,683	
4	희망키움통장 II -기초수급자 등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장려금 매칭지원	(×5,207) 8,880	(×△1,042)) △1,718	(×4,165) 7,162	
5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저축액에 장려금·수익금 매칭지원	(×411) 603	(×331) 486	(×742) 1,089	
6	청년희망키움통장 -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의 저축액에 장려금 매칭지원	(×2,022) 3,089	(×△256) △499	(×1,766) 2,590	
7	청년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장려금 매칭지원	(×1,503) 2,229	(×309) 428	(×1,812) 2,657	

2. 국비내시 변경사업 검토

- 복지정책실은 국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총 16건의 사업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 이 중 증액사업은 12건 226억 2천 8백만원, 감액사업은 자활지원과의 자활근로사업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총 4건, 38억 7천만원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써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244개 중 33.6%가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당초예산과 세입결산 간 차이가 크고, 이는 세출결산이 당초예산을 초과하는 연성예산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됨. 즉, 지방정부는 의존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재정부족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당초 세입 예산은 작은 반면, 세출결산은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 세입 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됨. 4)

4) 김필현 외(20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또한 국고보조금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조예산이 확정·배정되는 과정에서 매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⁵⁾.

- 현실적으로 예산배정에 대한 ‘가 내시’, ‘확정 내시’, ‘변경 내시’ 등 운영절차에 있어서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곤혹스럽게 하는 다소 무책임한 행태가 일종의 관행화되고 있음.

<표> 복지정책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제3회 추경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액 (B)	추경예산(안) (A+B)
1	지역돌봄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7,863) 26,795	(×5,981) 8,971	(×23,844) 35,766
2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606) 2,789	(×206) 413	(×813) 3,202
3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621) 39,959	(×417) 634	(×27,038) 40,593
4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	(×23) 23	(×23) 23
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9,178) 18,357	(×759) 1,517	(×9,937) 19,874
6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988) 3,293	(×203) 678	(×1,191) 3,971
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179,844) 354,354	(×4,276) 8,803	(×184,120) 363,157
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2,683) 5,366	(×180) 360	(×2,863) 5,726
9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지원	(×403) 806	(×74) 148	(×477) 954
10	자활지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2,877) 8,482	(×83) 166	(×2,960) 8,648
11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73,965) 108,483	(×△838) △1,229	(×73,128) 107,254
12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 I	(×2,066) 3,107	(×△237) △424	(×1,829) 2,683

5) 임성일·김성주(201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액 (B)	추경예산(안) (A+B)
13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II	(×5,207) 8,880	(×△1,042) △1,718	(×4,165) 7,162
14	자활지원과	내일키움통장	(×411) 603	(×331) 486	(×742) 1,089
15	자활지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2,022) 3,089	(×△256) △499	(×1,766) 2,590
16	자활지원과	청년저축계좌	(×1,503) 2,229	(×309) 428	(×1,812) 2,657

(1) 증액사업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가. 사업개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분절적인 기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대상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 개편하여 장기 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지원을 목적하는 사업임.
- '20년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399억 5천 9백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6억 3천 4백만원 증액된 405억 9천 3백만원을 추경 편성함.

<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본예산+간주 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x26,620,800) 39,958,600	(x416,950) 634,215	(x27,037,750) 40,592,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958,600천원 → 37,895,275천원 - 수행인력 조정(2,876명 → 2,791명) -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종료 ○ 특화서비스 사업비 및 기존 노인돌봄사업 수행인력 퇴직금 부족분 등 추기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서비스 사업비 : 693,360천원 · 기존 수행인력 퇴직금 지급분 등 : 2,004,180천원

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 본 사업의 이번 추경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노인정책과-6312, 2019.12.19.)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 관련 사업비 6억 9천 3백만원이 추가되고, 기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개를 통합·개편하는 과정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정산에 필요한 상계액 및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1,175명의 퇴직금 지급분(20억 4백만원)이 포함된 추경 예산액임.
- 본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기존 2,876명에서 2,791명으로 85명 감소정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추경(안)에서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볼 수 있는 바, 본 사업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주 대상임을 감안할 때,
 - 비록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한 감액이라도 할지라도 주서비스 대상자가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이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을 연결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내 이같은 특화서비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을 낮추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고 있으므로 시 자체의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 노인맞춤돌봄사업의 특화서비스는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되거나 은둔중인 어르신들을 사회로 끌어들이는 나들이 및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을 통해 효율적 사례관리와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화서비스 사업비 및 기존 노인돌봄사업 수행인력 퇴직은 대상 어르신들의 맞춤형 돌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 특히, 대상자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수행인력 퇴직에 따른 돌봄의 공백이 없는지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추경안 세부사업 검토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법과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에게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상을 중위소득 85%가구에서 중위소득 100%가구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예산으로 총 143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했음.

<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7,262,792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기 집행예산 2,875,062천원 - 향후 소요예산 4,210,898천원

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한시 완화 편성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보호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자료에는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금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산 및 소득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금 사업 집행 결과 (5.15 신청종료, 5.29 지급완료)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금번 서울형 긴급복지 지

원대상의 기준 완화는 이러한 사업결과가 반영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금은 223만 가구가 신청하였고, 당초 집행부 추계 가구보다 40% 증가한 164만 가구가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또한 소득조회 완료 건 중 25%에 달하는 511,770건이 조회된 소득과 실제소득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부적합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이 가운데 19,32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재난지원금 집행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본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목적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에 있는 점,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적절한 예상편성으로 사료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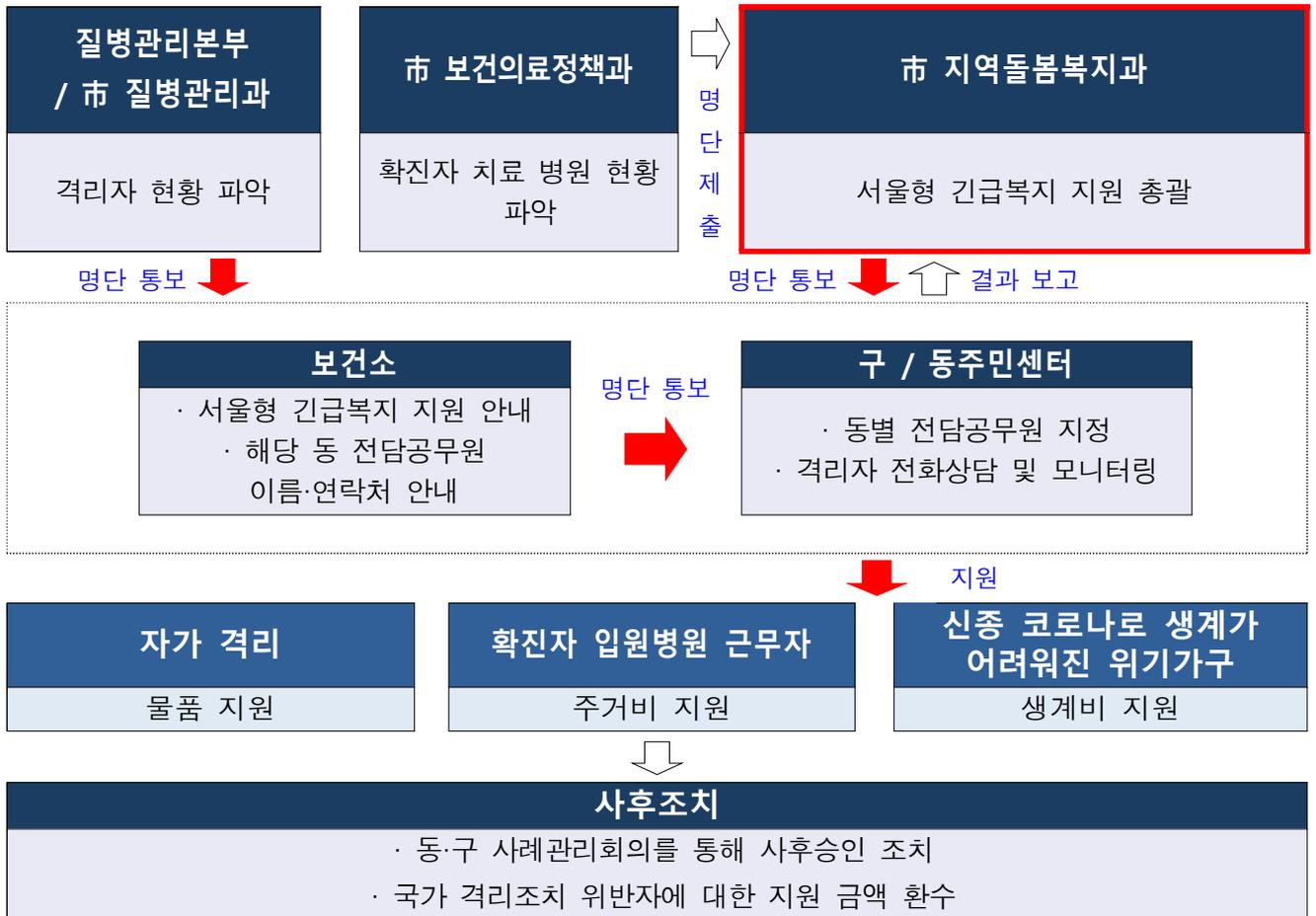
<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개선안 비교

		긴급복지지원 사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 대상	변경 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25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변경 후	· 소득기준 : 변동없음 · 재산기준 : 257백만원 ⁶⁾ · 금융재산 :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 ⁷⁾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32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변동없음
적용일자		3월 23일~7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5~12월 (소득기준) · 4~12월 (재산기준)

6) 재산기준 완화는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해 차감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여 35%의 재산 기준 상향효과가 나게 되는 것임.
7)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차감되는 것으로, 가구에 따라 비용은 상이함.

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또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자를 대상으로 생필품지원사업을 해당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시비 100%), 예산은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되며 자치구와 동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추진체계

<생활 준비금 공제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생활준비금 65% (현행)	1,142,000원	1,945,000원	2,516,000원	3,087,000원	3,658,000원
100% 확대시 효과액	615,194원	1,046,980원	1,354,577원	1,662,174원	1,969,771원

- 집행부에서는 과거 2015년 메르스와 관련해서도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기교부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우선사용하여 물품, 생계비, 주거비 일용직 종사자 지원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후 6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자치구에 교부한 바 있음.

2015년 메르스 관련 예산 조치사항

<국가 긴급복지>

- 기 교부된 국가 긴급복지 예산 우선 사용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 자치구에 총 7,791백만원 추가 교부
 - 국비 4,371백만원 추가지원, 시비 1,936백만원 추경 편성, 구비 1,484백만원 조정(특별)교부금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 기 교부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우선 사용하여 물품 지원
- 6억 원 예비비 편성 및 자치구 교부
- 총 5,029가구/ 5억 2천 8백만원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본래 실직, 휴업, 폐업, 화재,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됨.
- 하지만 20년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업의 기정예산이 123억인데 비해,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한 예산액이 143억으로 추경예산의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편성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음.

2)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 돌봄 SOS센터 사업은 시민이 중심인 돌봄 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SOS센터’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돌봄부담이 제로(Zero)인 서울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금년도에는 전년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돌봄 SOS센터’ 사업을 8개 자치구를 추가 선정해, 올해는 총 13개 자치구에서 확대추진하고 있음.

▶’19년 시행 5개구 :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20년 시행 8개구 :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 집행부에서는 이미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유로 22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 감액 내용은 인력채용 지연으로 인한 2단계 사업추진 8개 자치구 신규채용인력이 본래 3월 시험, 7월 배치 예정이었으나 각각 6월 시험, 10월 배치로 연기되면서 인건비 19억 9천 4백만원 (50%) 절감과 사업지연이 예상되면서 서비스 지원 사업비 250백만원(12%)를 절감한 것임.

- 집행부에서는 3차 추경에서 45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해, 내년도 사업참여 예정인 12개 자치구⁸⁾에 돌봄 SOS센터에서 제공 중인 돌봄서비스를 선행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8)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중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 자치구로 종로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초구, 중구, 강남구, 용산구임.

<표> 2020년도 돌봄 SOS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변경 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2차 추가경정 예산	3차 추가경정 예산
계 (증감)	3,065,545	12,535,978	10,291,915 (△2,244,063)	14,875,294 (4,583,379)
사무관리비	120,000	330,000	330,000	33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10,545	11,698,978	9,454,915 (△2,244,063)	13,978,294 (4,583,379)
자치단체 자본보조	135,000	507,000	507,000	567,000 (60,000)

<표> 2020년도 돌봄 SOS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변경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구 분	산출내역	증감사유
2차 추경예산 (20.5.4 제출)	○ 돌봄매니저 인건비 △1,994,063 천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 250,0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채용과 산업시행 지연으로 2단계 사업추진 8개구의 서비스 지원 인건비 및 사업비 감소
3차 추경예산 (20.6.5 제출)	○ 공간개선비 60,000 천원	돌봄SOS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신규 운영 12개 자치구, 기존운영 8개 자치구 추가 지원
	○ 돌봄매니저 인건비 546,179 천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3,977,200천원	돌봄 SOS센터 서비스지원사업비 및 돌봄매니저 인건비 편성

- 본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인력 채용이 연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는 등의 사안을 감안해 예산을 감액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1달만에 3차 추경 증액을 통해 내년도 시행예정인 12개 자치구에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선행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이처럼 빈번한 예산편성의 변경은 해당사업의 예산편성 및 추진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의심을 들게 하며,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금번 제3차 추가경정안에 포함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미참여 중인 12개 자치구가 내년도에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돌봄SOS센터에서 제공 중인 돌봄서비스를 선행 제공하는 형태로 돌봄SOS 사전사업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 인력의 채용과, 서비스 지원 사업비의 편성이 증액편성의 주된 내용임.

<표> 「돌봄SOS센터」 제공 8대 서비스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내용	-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단기간 시설 입소	-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 가정 내 시설의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 방역 등
제공 기관	- 사회서비스원 -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 단기보호시설 - 장기요양기관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구분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내용	-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 일상적 안부·아간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제공 기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보건소(건강돌봄서비스) -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등	- 돌봄매니저 직접제공

-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확대의 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관의 휴관, 재가돌봄,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제공이 중단되면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 공백이 생겼으며, 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아직까지 12개 자치구와의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돌봄 SOS센터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돌봄 매니저(각 동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구단위 돌봄지원단 설치)의 채용을 통한 인력확충이 포함되어 있는만큼, 자치구에서는 돌봄 SOS사업에 참여한다면 지속적으로 확충된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돌봄SOS센터 사업에서는 각 동에 돌봄매니저의 채용이 원칙이나, 금본 예산편성안을 통해 편성된 인건비는 각 자치구청에 돌봄지원단을 기간제 인력으로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사업 연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현재 집행부에서는 자치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해 사업의 성과 위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진행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3)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1) 추경안 개요

- 동 추경안은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예산내에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보완대책의사소통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 1억8천만원을 감추경하고, ‘서울시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1억8천만원을 증추경하는 내용임.

<표> 서울시보조기기센터운영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추경예산안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 (A+B)
서울시보조기기센터운영	1,704	△180	1,524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운영	-	180	180

(2) 추경안 검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2018.1.4.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의사소통장애인⁹⁾들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¹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보조기기 상담을 위해 2018년부터 보조기기센터 4개소(동북, 동남, 서북, 서남)에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등 보완대체의사소통 전문인력¹¹⁾을 배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기능을 강화시켜 왔음.¹²⁾
- 그러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관련 사업이 대개 센터 당 전담인력(1명)에 의존하여 이용자 대상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교재제작, 교육 매뉴얼 제작 등의 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체계가 전문적으로 정립되진 못하였다는

9) 의사소통장애인이란 구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등을 포함됨. 이에 따라 서울시 의사소통장애인은 17만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394,786명)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2020.1.31.기준)

10)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구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의 장애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보완해 주는 임상치료의 한 영역
출처: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8

구분	배치인원	자격기준	담당업무
11) ACC 전문인력	센터당 1명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의사소통보조기기(ACC)상담, 평가, 적용, 임대 및 사용 훈련 -의사소통보조기기(ACC)관련 관계자 지원, 교육 및 자료 제작 -의사소통보조기기(ACC)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12)서울시 보조기기센터운영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9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¹³⁾.

- 이에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20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예산에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 1억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표> 2020년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예산안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산출내역	
계			1,604,544
민 간 위 탁 금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286,544
	-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인건비,운영비		1,106,544
	-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서비스 강화		180,000
민 간 위 탁 사 업 비	○보조기기 구입비		318,000
	- 보조기기 구입비		310,000
	- 유모차 대여비 지원		8,000

출처 : 「2020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기기센터와는 별도의 사업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사업 방향을 변경¹⁴⁾ 하면서,
- 기존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예산의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 1억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 한편 민간위탁예산 편성은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로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② 의회동의→③ 예산안 의결의 절차¹⁵⁾를 거쳐야 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후 사업 방향 변경에 따

13)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운영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9

14)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관련 신규사업 추경 예산 편성’ 장애인복지정책과-11126(2020.6.4.)

15) ○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라서 제 295회 정례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 1589)과 추경예산안(의안번호 1616)이 함께 제출된 상황임.

<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액	추경 예산(안)	증감사유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704	△180	1,524	일부 예산을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사업비로 분리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	180	180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단독사업으로 분리

출처: 장애인복지정책과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보급 및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¹⁶⁾ 인정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전체 예산 1억 8천만원 중 인건비는 5,435만원으로 의사소통관련 전문가 4명에 대하여 4개월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대상: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따른시의회동의대상사무
 ※ 동의안과예산안은같은회기에상정되지않도록하는것이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 예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가능
 출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획조정실, 2020

16) 초기 상담 및 정보제공,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개발 및 보급, 숙련도 제고를 위한 중재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출처:서울시복지재단(2018),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연구)

<표>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 산출내역

- 예산내역 : 180,000천원(3개월분, '20년 9월 개소 예정)
 - 민간위탁금 : 160,000천원
 - 인건비 : 54,350천원(전문가 등 4명 X 40,762천원/ 3(4개월분))
 - 운영비 : 105,650천원(매뉴얼 제작 및 홍보비 등)
 - 민간위탁사업비 : 20,000천원(의사소통 보조기기 구입비)

- 본 사업이 추진 목적은 의사소통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지원하고 의사소통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전문가, 언어병리학전문가, 언어치료사, 보조공학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서울시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동 사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민간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 추경안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본 예산액은 354,354백만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803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A+B)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79,844)	(×4,276)	(×184,120)
-활동지원급여	354,354	8,803	363,157

- 추경편성의 내용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분 7,355백만원, 시비추가 사업 단가 인상(단가 13,350원→13,500원) 반영분 448백만원,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추진 예산 1,000백만원 등임.

(2) 추경안 검토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중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추진 예산 1,000백만원은 현행법상 만65세 이상 고령이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지원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임.

- 양제도 간 지원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장기 요양급여의 제도 설계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 제공량을 다르게 정하였기 때문임.

먼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데 취지¹⁷⁾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¹⁸⁾가 목적이므로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을 지원하고 있음.

※ 서비스 지원시간 : 일 최대 24시간 제공에서 4시간으로 감소

<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비교

구 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법 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 상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국민건강보험 가입 만65세 이상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종 류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지 원	월 45시간~830시간 (※최대 국비 480 시비 350)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72시간~108시간
절 차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종합조사 →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지 원 방 법	바우처	바우처

출처: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진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

- 그동안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은 고령으로 인해 더 많은 활동 지원이 필요한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령미비와 사회보장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음.
-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65세가 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광역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긴급 정책 개선 권고(20.3.30)를 시행하였고,

○ 그동안 법률의 제·개정 없이는 서비스시간 확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던 보건복지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협의제외 대상¹⁹⁾으로 향후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협의 대상으로 통보하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²⁰⁾.

○ 한편 추경예산안은 2020년 65세 도래 최종증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일일 11.75시간씩 7개월 동안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11.75시간×30일×7개월×13,500원×30명	1,000,000

출처 :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공대상²¹⁾ 중 2020년 65세 도래자(1955년생)중 최종증장애인은 별도조사를 통해 인원을 파악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확한 대상인원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는

19) 동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회성 단년도*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협의 운용지침 상 “협의 제외” 대상이므로 반려함

* 2020년 7월~12월 (세부일정 유동적이나 단년도에 한하여 시행)

- 단, 향후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협의대상임

출처 : 서울특별시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633(2020.05.15.)

20) 19년도에도 65세 이상 고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예산 1.097백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음.

21) (제공대상) 2020년 65세 도래 최종증장애인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자 : 8명 ('19년 10월 2명, '20년 3월 6명)

② 2020년 65세 도래자(1955년생) 중 최종증장애인 ※ 별도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X1 점수 360점 (인정점수 400점)이상자 - 보건복지부 기준

③ 2020년 65세이상 탈시설 고령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과-10049(2019.5.17.)>

출처:65세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진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10084(2020.5.21.)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노력 등을 통해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소결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주요국의 봉쇄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분기 (잠정)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했으며, 고용에서도 취업자가 19만 5천명 감소한 상태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층으로 저소득층에서는 실업·비경제활동인구(노인), 중간계층에서는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등이 대두되고 있음.²²⁾
 - 전통적 영역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노동시장 참여(노인 일자리, 정부재정 지원 일자리 미운영 등)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단기적 위기에 놓일 수 있으며, 경제가 위축되면서 소득이 단절되는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빈곤층, 근로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기상황과는 다르게 제조업·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이 소득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바이러스가 가지는 전염성에 대한 우려로 대면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영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22) 김태완(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방안. 보건복지 ISSUE&FOCUS(3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번 복지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시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빈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가 단기간에 변경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집행에 차질이 생긴 사업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본사업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한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